

2022년도 문화재위원회

제11차 능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자료

- ▣ 회의일시 : 2022. 12. 20. (화요일), 14:00 ~
- ▣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
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

1.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10조에 따라,
 -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,
 -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,
 -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(법인의 상근·비상근 임직원 포함)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,
 -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,
 -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되며,
 -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.
 -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.
2.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3. 아울러 「문화재위원회 규정」 제9조 및 「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」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.
4. 「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」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·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목 차

【심의사항】

- 1 구리 동구릉 주변 주상복합 신축
- 2 송례문 주변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 A노선 부설(허가 변경)
- 3 사직단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- 4 창경궁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- 5 광명 영회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- 6 서울 선릉과 정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- 7 서울 현릉과 인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
【검토사항】

- 1 궁·능 내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
- 2 창경궁 편의시설(관람객화장실·방호실) 정비공사

【보고사항】

- 1 창경궁 명정문 보수 및 단청 공사
- 2 고양 서삼릉 매표소 설치 사업
- 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

심 의 사 항

【 심의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2-11-001

1. 구리 동구릉 주변 주상복합 신축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구리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「구리 동구릉」 주변 주상복합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구리 동구릉 주변에 주상복합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 - '22년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2.09.20.) / 부결 :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
 - '22년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('22.10.18.) / 부결 :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구리 동구릉(사적)
 - 소재지 :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97 (인창동)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701, 701-1
(문화재구역에서 420m 이격)
 - 허용기준 6구역(최고높이 45m이하)
 - 사업내용 : 주상복합 신축

구분	당초('22.9.20./부결)	당초('22.10.18./부결)	금회(안)	비고
부지면적	2,234.7㎡	좌동	좌동	
건축용도	주상복합	좌동	좌동	
건축면적	1,563.41㎡	1,564.00㎡	1,561.69㎡	
연면적	22,135.9㎡	22,039.07㎡	22,129.06㎡	
건축규모	2개동, 지하5층 ~ 지상17~23층 (최고높이: 74.6m, 71.75m)	2개동, 지하5층 ~ 지상20층 (최고높이: 63.05m)	1개동, 지하5층 ~ 지상18층 (최고높이: 56.95m)	

- 신청인 의견 : 없음

라. 참고사항

(1) 현지조사 의견('22.12.16./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)

- 주변 지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건물의 높이를 조정했지만 현상변경허용 기준 높이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60미터가 넘는 건물을 판상형으로 계획함으로 인해 역사문화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

(2) 현지조사 의견('22.9.14./문화재위원 ○○○, 문화재전문위원 ○○○)

- 본 건물은 구리 동구릉 문화재 주변 6구역에 위치한 신축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현지조사 건입, 6구역 허용 최대높이는 45m로서 계획안의 최고높이 74.6m는 이를 훨씬 초과하였음
- 승릉의 능침으로부터 육안으로 확인 결과 신축건물이 능으로부터 조망될 것으로 예상됨
- 이를 종합할 때 신축건물이 문화재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

2. 승례문 주변 수도권광역급행철도(GTX) A노선 부설(허가 변경)

가. 제안사항

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국보 「승례문」 주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-A노선 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기허가된 「승례문」 주변 GTX-A노선 공사계획 중 터널 공법을 변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- '19년 제2차 사적분과 위원회 회의(2019. 2. 13.): 조건부 가결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국보 승례문(서울특별시 중구 소재, 1962. 12. 20. 지정)
- (3) 신청내용
 - 위치 : GTX-A노선 총연장 45.075km 중 STA. 32km155~32km495 구간 (승례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해당 구간 340m)
 - 허용기준 1구역(지표면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60.6m 이격)
 - 사업내용 : 노선 총연장 중 530m(심의대상 340m) 구간에 대한 공법 변경
 - 승례문 구간 암반상태가 4, 5등급(단층·균열 등 암질 불량)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 및 승례문 안전 확보를 위해 굴진면의 육안검측이 가능한 공법으로 변경

구분	기허가('19. 4. 2.)	변경(안)	비고
굴진공법	TBM 굴착공법	전자제어 굴착공법	
터널직경	11,600 × 11,600	12,400 × 12,660(구조물 두께 향상)	
굴착기간	약34일(굴진속도 10m/일) 예상	약170일(굴진속도 2m/일) 예상	
진동특성	연속진동	충격진동	
진동노출시간	306시간(일평균 굴착시간 9시간)	1.4시간(일평균 굴착시간 30초)	
진동속도	0.013cm/sec	0.041cm/sec	허용기준 0.2cm/sec
진동레벨	42.3	48.6	허용기준 60dB(V)

- (4) 신청인 의견
 - 없음

라. 참고사항

(1) 자문의견('22.12.7./서울대학교 교수 ○○○)

- 자문안건은 2019년 기 허가받은 GTX-A노선 공사계획(연장 45.075km) 중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불안정한 지반에서 오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530m구간 터널굴진공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, 굴착지반여건을 고려한 선제적인 공법 변경은 바람직하다 하겠음.
- 신청인이 제시한 진동·침하 예측치는 기허가 예측치에 비하면 일부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 하지만 연속진동이 발생하는 TBM공법에 비해 일시적인 충격진동을 발생하는 전자제어 굴착공법이 진동노출시간을 현격히 (기허가: 306시간, 변경허가: 1.4시간)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, 금회 변경은 문화재 보호 관리측면에는 더 유리하고, 문화재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단, 신규 설치 구조물이 문화재가 위치한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약 60m 이격되어 있으며, 진동·침하 예측치가 현재 발생하는 생활진동(0.1~0.2cm/sec)보다 낮은 미미한 수준이라 하더라도, 제시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계획단계부터 공사완료 후 열차 운행과정까지도 철저히 문화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.

(2) 참고의견(○○○)

- 굴착공사 종료 시까지 우리 부, 국가철도공단 주관하에 문화재 전문위원, 상주전문가, 시공관련자가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매월 1회 개최 예정이며, 필요시 문화재감시단(문화재청 또는 위원회 추천)을 운영하는 등 문화재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음

3. 사직단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
가. 제안사항

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「사직단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사직단」 및 「사직단 대문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(1) 신청인 : ○○○

(2) 대상문화재

- 사적 사직단(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, 1963. 1. 21. 지정)
- 보물 사직단 대문(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, 1963. 1. 21. 지정)

(3) 신청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
○ 주요내용

- 허용기준 구역 변경사항 없음, 보물 사직단 대문과 통합 고시
- 문화재지정구역 변경 고시(2012. 8. 23.)에 따른 지정구역 경계 반영
- 1구역 : 보존구역 → 개별검토(허용기준 작성지침 개정 '22. 11. 30.)
- 고도제한구역(2~6구역) : 건축물 표기 삭제
- 6구역 '양각(27°) 적용' 표기 수정
- 공통사항
 - *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
 - * 허용기준 작성지침 [별표3] '허용기준 공통사항'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

○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0-131호, 2010. 12. 22.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보존구역		
2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	
3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	
4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	
5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	
6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47m 이하 ○ 양각(27°) 적용	○ 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○ 양각(27°) 적용	
공통사항	○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·재축은 허용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		

○ 조정안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검토		
2구역	○ 최고높이 5m 이하	○ 최고높이 7.5m 이하	
3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1m 이하	
4구역	○ 최고높이 14m 이하	○ 최고높이 17m 이하	
5구역	○ 최고높이 20m 이하	○ 최고높이 23m 이하	
6구역	○ 최고높이 47m 이하	○ 최고높이 50m 이하	
	○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적용		
공통사항	○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 ○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.(1구역은 50m 이하도 개별검토) ○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		

(4) 신청인 의견: 없음

4. 창경궁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
가. 제안사항

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「창경궁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창경궁」 및 「창경궁 명정전」 등 9개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: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문화재 9개소
 - 사적 창경궁(1963. 1. 21. 지정)
 - 국보 창경궁 명정전(1963. 1. 21. 지정)
 - 보물 창경궁 명정문 및 행각(1963. 1. 21. 지정)
 - 보물 창경궁 옥천교(1963. 1. 21. 지정)
 - 보물 창경궁 홍화문(1963. 1. 21. 지정)
 - 보물 창경궁 통명전(1985. 1. 8. 지정)
 - 보물 창경궁 관천대(1985. 8. 9. 지정)
 - 보물 창경궁 풍기대(1985. 8. 9. 지정)
 - 보물 창경궁 팔각칠층석탑(1992. 1. 15. 지정)
- (3) 신청내용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 - 주요내용
 - 창경궁 내 국보, 보물 8개소 포함 통합 고시
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겹치는 동일지역 내 허용기준 불일치 통일
 - * 창덕궁, 문묘(11m/14m), 창경궁(14m/17m) → 11m/14m 구역으로 통일
 - 문화재 경계로부터 100m 반경선 오류 수정
 -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00m 외곽 불필요한 구역표시(채색) 제거
 - 1구역 : 보존구역 → 개별검토(허용기준 작성지침 개정 '22. 11. 30.)
 - 공통사항
 - *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
 - * 허용기준 작성지침 [별표3] '허용기준 공통사항'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

○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0-131호, 2010. 12. 22.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보존구역		
2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	
3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	
4구역	○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	○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·재축은 허용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 ○ 창경궁 동북측 지역(문묘 인접지역)의 건축물 높이는 창경궁 지정·보호구역에 설치된 담장 높이보다 낮게 건축물 높이를 제한함. 		

○ 조정한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검토		
2구역	○ 최고높이 8m 이하	○ 최고높이 11m 이하	
3구역	○ 최고높이 11m 이하	○ 최고높이 14m 이하	
4구역	○ 최고높이 14m 이하	○ 최고높이 17m 이하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: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. ○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.(1구역은 50m 이하도 개별검토) ○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○ 창경궁 동북측 지역(문묘 인접지역)의 건축물 높이는 창경궁 지정·보호구역에 설치된 담장 높이보다 낮게 건축물 높이를 제한함. 		

(4) 신청인 의견: 없음

5. 광명 영회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광명시 소재 사적 「광명 영회원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광명 영회원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(1) 신청인 : ○○○

(2) 대상문화재 : 사적 광명 영회원(경기도 광명시 소재, 1991. 10. 25. 지정)

(3) 신청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
○ 주요내용

- 허용기준 도면 변경 없음

- 1구역 : 보존구역 → 개별검토(허용기준 작성지침 개정 '22. 11. 30.)

- 공통사항

*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

* 허용기준 작성지침 [별표3]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

*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

○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0-131호, 2010. 12. 22.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보존구역		
2구역	○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	
공통사항	○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·재축은 허용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.		

○ 조정한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검토		
2구역	○ 광명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시설,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(축사, 도축장, 도계장), 장사시설(묘지 관련시설, 장례시설)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공장창고시설(산업단지, 물류터미널, 물류단지 등) 등과 같이 소음·진동·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·화학물질·먼지·빛·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 ○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. ○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. ○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표면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○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처리함. ○ 수목의 제거(고사목·피해목 제외) 또는 3,000㎡ 이상의 식재는 개별 심의함. ○ 제1구역에서 「국가지정문화재 지정(보호)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」(문화재청 고시 제2021-111호)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 허가 신청 건은 광명시와 협의를 거쳐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행위 가능 ○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등은 개별 심의함. ○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		

(4) 신청인 의견

○ 조정 사유: 대상 문화재의 유형 및 특성 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·개선하기 위함.

6. 서울 선릉과 정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
가. 제안사항

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사적 「서울 선릉과 정릉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서울 선릉과 정릉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(1) 신청인 : ○○○

(2) 대상문화재 : 사적 서울 선릉과 정릉(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, 1970. 5. 26. 지정)

(3) 신청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
○ 주요내용

- 허용기준 도면 변경 없음

- 1구역 : 보존구역 → 개별검토구역(허용기준 작성지침 개정 '22. 11. 30.)

- 2구역 : 표준 적용(시도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임처리 구역)

- 공통사항

*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

* 허용기준 작성지침 [별표3]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

○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0-138호, 2010. 12. 31.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보존구역		
2구역	○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7.5m 기준하여 양각 27° 적용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·재축은 허용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. ○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(예: 지붕색상 - 회색, 밤색 등) ○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(반사)이 강한 금속자재, 유광타일,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○ 아파트 신축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		

○ 조정한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검토		
2구역	○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. 단, 문화재 외곽경계 지표에서 7.5m높이를 기준하여 양각 27°선 이내에 한함.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.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자원순환 관련 시설, 발전시설(태양광 등),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. ○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. ○ 원색 계열의 색상은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함.(예: 지붕색상-회색, 밤색 등) ○ 건축물 및 시설물의 외벽재료는 광택(반사)이 강한 금속자재, 유리타일,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. ○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. ○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,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. 		

(4) 신청인 의견

○ 조정 사유 : 문화재의 유형 및 특성과 개별 문화재의 입지·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·개선하기 위함

7. 서울 헌릉과 인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

가. 제안사항

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사적 「서울 헌릉과 인릉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서울 헌릉과 인릉」 및 「서울 태종 헌릉 신도비」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

다. 주요내용

(1) 신청인 : ○○○

(2) 대상문화재

- 사적 서울 헌릉과 인릉(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, 1970. 5. 26. 지정)
- 보물 서울 태종 헌릉 신도비(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, 2013. 7. 16. 지정)

(3) 신청내용 :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

○ 주요내용

- 허용기준 구역 변경 없음, 보물 서울 태종 헌릉 신도비와 통합고시
- 1구역 : 보존구역 → 개별검토(허용기준 작성지침 개정 '22. 11. 30.)
- 공통사항 :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

○ 현행(문화재청 고시 제2010-138호, 2010. 12. 31.)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보존구역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·재축은 허용 ○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. ○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(예: 지붕색상 - 회색, 밤색 등) ○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(반사)이 강한 금속자재, 유광타일,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		

○ 조경안

구분	현상변경 허용기준		비고
	평지붕	경사지붕(10:3 이상)	
1구역	○ 개별검토	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·재축을 허용함 ○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○ 색채는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(예: 지붕색상 - 회색, 밤색 등) ○ 외벽재료는 광택(반사)이 강한 금속자재, 유광타일,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		

(4) 신청인 의견

○ 없음

검 토 사 항

【 검토사항 】

안건번호 공능 2022-11-008

1. 공·능 내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

가. 제안사항

공·능 사적 13개소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공개 제한 기간('13년~'22년)이 도래한 공·능 사적 12개소와 신규 사적 1개소, 총 13개소의 공능 사적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공개 제한을 부의하는 사항임
 - 추진경과
 - '13년 1월 : 공·능 내 국가지정문화재(사적) 15건 공개 제한 고시
 - '16년~'20년 : 국가지정문화재(사적) 공개 제한 해제(3개소)
 - * 남양주 흥릉과 유릉, 파주 장릉, 양주 온릉(3개소/ 전체), 서삼릉(일부) 공개 제한 해제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경복궁 등 13개 사적(궁2, 능1, 원6, 묘7/ 16개 지역)
- (3) 제한근거 :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8조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30조
 - * 문화재 보호법 제48조(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등)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.
- (4) 신청내용
 - 제한대상
 - 공개 제한 연장 : 경복궁(녹산 지역) 등 공·능 사적 12개소
 - 신규 공개 제한 : 광명 영화원 1개소
 - 제한기간 : 2023. 1. 1. ~ 별도 해지 시까지
 - 제한사유 : 문화재 보존 및 훼손방지
 - 위반 시 재재내용 :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
 - 공개제한의 예외 : 문화재 수리·관리, 문화재 보호·보존을 위한 학술조사,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보존·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

○ 국가지정문화재(사적) 공개제한 목록

연번	지정명칭	소재지	공개 제한 문화재 명칭 및 해당 지역의 위치	제한기간		제한지역	제한사유
				당초	변경		
1	경복궁	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	녹산 (건청궁 동측에 위치)	2013.1.1.~ 2022.12.31.	2023.1.1.~ 별도해제시까지	사적지 432,704㎡ 중 21,636㎡	문화재의 보존 및 훼손방지
2	창덕궁	서울 종로구 율곡로 99	신선원전 권역 및 능허정, 옥류천 권역 일부	2013.1.1.~ 2022.12.31.	2023.1.1.~ 별도해제시까지	사적지 542,575.4㎡ 중 239,200㎡	문화재의 보존 및 훼손방지
3	고양 서삼릉	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	효릉, 소경원, 경선·경완군묘, 경혜옹주묘	2013.1.1.~ 2022.12.31.	2023.1.1.~ 별도해제시까지	효릉(38,678㎡), 소경원(26,479㎡), 경선·경완군묘(3,570㎡), 경혜옹주묘(5,094㎡), 귀인덕수장씨묘 초장지(13,190㎡)	문화재의 보존 및 훼손방지
4	남양주 순강원	경기 남양주시 진접읍	순강원	2013.1.1.~ 2022.12.31.	2023.1.1.~ 별도해제시까지	남양주 순강원 전역 423,808㎡	문화재의 보존 및 훼손방지
5	광명 영화원	경기 광명시	영화원	신규	2023.1.1.~ 별도해제시까지	영화원 전역 34,978㎡ * '13. 2월 문화재청 관리(광명시 관리 위임 '06년 9월 ~'13년 1월까지)	문화재의 보존 및 훼손방지
6	파주 소령원	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	소령원	2013.1.1.~ 2022.12.31.	2023.1.1.~ 별도해제시까지	소령원 전역 214,759㎡	문화재의 보존 및 훼손방지
7	파주 수길원	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	수길원	2013.1.1.~ 2022.12.31.	2023.1.1.~ 별도해제시까지	수길원 전역 143,060㎡	문화재의 보존 및 훼손방지
8	남양주 휘경원	경기 남양주시 진접읍	휘경원	2013.1.1.~ 2022.12.31.	2023.1.1.~ 별도해제시까지	남양주 휘경원 전역 154,576㎡	문화재의 보존 및 훼손방지
9	남양주 광해군묘	경기 남양주시 진건읍	광해군묘	2013.1.1.~ 2022.12.31.	2023.1.1.~ 별도해제시까지	남양주 광해군묘 전역 39,168㎡	문화재의 보존 및 훼손방지
10	구리 명빈묘	경기 구리시 아천동	명빈묘	2013.1.1.~ 2022.12.31.	2023.1.1.~ 별도해제시까지	명빈묘 전역 8,138㎡	문화재의 보존 및 훼손방지
11	남양주 성묘	경기 남양주시 진건읍	성묘	2013.1.1.~ 2022.12.31.	2023.1.1.~ 별도해제시까지	남양주 성묘 1,785㎡	문화재의 보존 및 훼손방지
12	남양주 안빈묘	경기 남양주시 진건읍	안빈묘	2013.1.1.~ 2022.12.31.	2023.1.1.~ 별도해제시까지	남양주 안빈묘 전역 1,983㎡	문화재의 보존 및 훼손방지
13	남양주 영빈묘	경기 남양주시 진접읍	영빈묘	2013.1.1.~ 2022.12.31.	2023.1.1.~ 별도해제시까지	남양주 영빈묘 전역 36,776㎡	문화재의 보존 및 훼손방지
합계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적 13개소(궁2, 능1, 원6, 묘7) * 경복궁1, 창덕궁1, 서부지구관리소(능1, 원4, 묘2), 동부지구관리소(원2, 묘5)</p>						

(5) 신청인 의견

- 이번에 공개 제한하고자 궁·능 사적 13개소는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하여 2013년부터 공개를 제한하고 있으며, 현재 진입로 등 접근성이 떨어지고, 화장실·주차장·매표소 등 편의시설이 전혀 구축되지 않아 관람환경이 미흡한 실정임
- 아울러 문화재 보존·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이 배치된 상황으로 공개 시 문화재 보존 및 훼손 우려도 있어 지속적으로 공개 제한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- 일부 지역(효릉, 순강원 등)은 고건물 복원, 관람환경 조성을 추진 중으로 정비 완료 시에는 공개 제한을 해제하여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음

라. 참고사항 (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의견)

(1) 경복궁('22.12.5./문화재전문위원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
- 경복궁 북동쪽에 위치한 녹산지역은 발굴후 복원하여 관리중이나, 원형에 대한 복원이 매우 미흡하고, 별도의 관람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지속적인 복원정비 및 관람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, 현시점에서는 공개 제한이 필요한 실정임
- 한편 수림이 조성되어 있는 주변지역으로 수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가 요구됨

(2) 창덕궁('22.12.5./문화재전문위원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
- 창덕궁의 신선원전 권역 및 능허정은 창덕궁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두 영역은 최근 멧돼지 출몰 등 관람환경이 위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
- 또한 건조물의 보수 및 관람편의시설의 정비와 신축 이후 시민 개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
- 신선원전은 일제시기에 조성되었고 능허정은 후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훼손 방지 차원에서 비공개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

(3) 고양 서삼릉('22.12.12./문화재위원 ○○○, 문화재전문위원 ○○○, ○○○)

- 효릉은 왕릉의 원형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진입로 및 부지 확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
- 외부기관(젓소개량소, 목장, 군부대)이 조선왕릉 내외에 광범위하게 위치하여 능제시설이 훼손되거나 유실인 상태임
- 각 능역을 잇는 동선의 단절, 진입로가 없음
-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시설 이전과 함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복원정비가 요구됨(소경원 '22년 정자각 설계완료, '24년 복원공사 예정)
- 장기적인 복원정비계획에 따라 젓소개량소 등 외부기관이 2032년 이후에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부적합시설의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- 효릉, 소경원은 기본적인 진입로가 젓소개량사업소를 통과해야함
- 효릉의 별도의 관람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지속적인 공개제한이 필요
- 경선,경완군묘는 군부대 안에 위치해 있음
- 경혜옹주묘는 도로가에 위치, 주차장이 없고 관람환경 미비함

(4) 광명 영회원('22.12.5./문화재전문위원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
- 광명 영회원은 2013. 2월부터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, 진입로 비포장·협소, 주변 민가 등 사유지로 접근성이 열악하며 관람환경이 미흡하여 공개제한 하고 있음
- 1970년부터 주변의 땅을 개발하면서 홍살문·정자각이 소실되어 현재 영회원 내에 조선왕릉의 능제를 구성하는 건조물은 봉분외에는 존재하지 않음
- 향후 정자각, 수복방, 수라간 및 재실 등 능제를 구성하는 필수건조물 복원 및 관람 기반시설 정비 후 공개 검토 필요함

(5) 파주 소령원('22.12.7./문화재위원 ○○○, 문화재전문위원 ○○○, ○○○)

- 관람을 위한 진입로가 협소한 상황임
- 현재 사무실도 없고 임시 컨테이너동에서 관리운영 되고 있음
- 관람구역이 소령원, 수길원, 소령원 신도비각 세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개방시 관리구역 및 관람동선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함
-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장, 관람객 화장실 및 관리사무실 설치가 필요함
- 현재 별도의 관람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사적지 원형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비공개 관리가 필요함

- (6) 파주 수길원('22.12.7./ 문화재위원 ○○○, 문화재전문위원 ○○○, ○○○)
- 현재 진입로가 협소하고 소령원, 수길원 등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향후 관람동선의 설정 및 관리구역을 정비하는데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함
 - 관람객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리사무소와 더불어 상당한 시설이 향후 마련되어야 개방이 가능할 것임
 - 정자각 복원과 수라간, 수복방 복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
 - 현재 관람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
- (7) 남양주 순강원('22.12.6./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, 문화재전문위원 ○○○)
- 재실이 있고 관람권역이 갖추어져 있는 등 왕릉 내부 환경이 좋음
 - 현재 수라간, 수복방의 경우 발굴조사를 통하여 복원 정비가 필요함
 - 주차장, 관리사무실, 화장실, 매표실 등 관람지원시설이 '22년 공사 착수하여 '23년 11월 완료예정이므로 이후 관람환경 및 운영기반인 안력, 예산 등이 확보되면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
- (8) 남양주 휘경원('22.12.6./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, 문화재전문위원 ○○○)
- 비각, 정자각 목조건물만 남아 있는 상태로 수라간, 수복방 터로 추정되는 위치에 유구가 일부 확인되어 복원정비가 필요함
 - 휘경원 능역 경계 울타리 밖의 금천교 정비도 필요함
 - 주차장, 매수표소, 화장실 등 관람편의시설이 전혀 없음
 - 능제 구성 필수 건조물 복원 및 관람환경 시설 정비 완료시까지 사적지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비공개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
 -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변 민가 등 사유지로 인하여 접근성 열악함
 - 봉분이 비대칭하여 복원정비가 필요함
- (9) 남양주 광해군묘('22.12.6./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, 문화재전문위원 ○○○)
- 2015년 정비 사업을 통해 진입로를 신설하여 관람환경이 개선됨
 - 전면 재실터로 추정되는 지역의 발굴조사 필요하며, 광해군묘 정면의 진입로를 확보하며 원형을 회복시키 필요가 있음
 - 능제 구성 필수 건조물 복원 및 관람환경 시설 정비 완료시까지 사적지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비공개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

- (10) 구리 명빈묘(‘22.12.6./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, 문화재전문위원 ○○○)
- 2018년 관람데크와 울타리 등 정비가 이루어졌음
 - 묘역이 협소하므로 관람객 접근과 주차장 및 관리시설, 편의시설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 요구되므로 인접 부지 매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
 - 현재 발굴 및 복원정비 계획이 수립된 바가 없으므로 사적지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비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
- (11) 남양주 성묘(‘22.12.6./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, 문화재전문위원 ○○○)
- 광혜군 생묘의 묘소로 성릉으로 봉해졌다가 성묘로 격하되었으므로 묘소의 석물은 왕릉급에 해당함,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함
 - 진입로에 개인주택이 많고, 개인 주택의 사유공간을 통과하여 진입하는 등 접근성이 열악함
 - 주차장, 매표소, 화장실 등 관람편의시설이 없으며 진입로가 매우 급경사임
 - 현재 발굴 및 복원 정비 계획이 없으므로 사적지의 원형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
 - 진입로 확보를 위한 환경정비가 필요함
- (12) 남양주 안빈묘(‘22.12.6./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, 문화재전문위원 ○○○)
- 주차장, 매표소, 화장실 등 관람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음
 - 진입도로가 협소하고, 묘역이 좁아서 개방여건이 열악하므로 관람을 위해 서는 주변 진입로 개설 및 사적지 확대가 필요함
 - 묘역 관리를 위한 초소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이전 또는 철거 검토되어야함
 - 현재 발굴 및 복원정비 계획이 없으므로 사적지 원형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비공개가 바람직함
- (13) 남양주 영빈묘(‘22.12.6./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, 문화재전문위원 ○○○)
- 진입로가 매우 협소하고, 주변 민가 등 사유지로 접근성 및 경관이 열악함
 - 영빈묘 참배로 진입부 경사가 매우 급해 관람동선 등 정비 필요함
 - 제례동선의 정비나 금천교의 복원, 능침 앞의 재실터 추정되는 유구 확인 후 복원정비가 필요함
 - 능제 구성 필수 건조물 복원 및 관람환경 시설정비 완료시까지 사적지의 원형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

2. 창경궁 편의시설(관람객화장실·방호실) 정비공사

가. 제안사항

서울 종로구 소재 사적 「창경궁」 내 편의시설(관람객화장실·방호실) 정비공사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창경궁 내 편의시설(관람객화장실·방호실) 노후 협소하여 관람편의 증진을 위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(1) 신청인 : ○○○

(2) 대상문화재명 : 사적 창경궁

○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

○ 지정일 : 1963. 1. 18.

○ 대상현황

- 창경궁 내 관람객화장실(총 4개동: 1호화장실)

· 건립연도: 1980년대

· 구조/면적: 목조/기와

· 편의시설: 장애인화장실(남·녀 공용 1개소) 대(여6/남2) 소(3)

※ 창경궁 내 화장실 현황

구분	건립연도				비고
	1호	2호	3호	4호	
건립연대	1980년대	1980년대	1980년대	1980년대	
구조	목조/기와	목조/기와	목조/기와	목조/기와	
면적	39.2㎡	61.31㎡	40.2㎡	40.2㎡	
장애인화장실	남·녀공용 1개소	남·녀공용 1개소	남·녀공용 1개소	남·녀공용 1개소	
영유아시설	무	무	무	무	

- 창경궁 방호실

· 면적: 154㎡

· 상주인원: 26명(방호원 7명, 청원경찰 2명, 안전관리원 주·야 17명)

(3) 신청내용

- 사업예산: 1,000백만원
- 사업내용
 - 관람객화장실 신축

구분		면적(m ²)
화장실동	화장실/가족화장실	107.99
	유아휴게실/수유실	24.00
	청소근로자휴게실	6.60
	창고	3.00
합계		141.59

구분		면적(m ²)
방호동	업무공간	59.52
	휴게공간	13.60
합계		73.12

- 시굴조사: 화장실 신축부지(300m²)

라. 참고사항

(1) 검토의견(○○○)

- 기존 관람객화장실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한 관람객 불편사항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으며,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시설물 이용자 분들의 편의 증진 요구에 맞는 현대식 시설의 설치가 필요함에 관람객 편의가 떨어지는 노후 관람객화장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
- 방호실 사무공간과 안전요원들의 동일한 공간을 사용하므로 보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,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별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보안문제 해결 및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함

(2) 자문의견('22.9.7./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, 전 문화재전문위원 ○○○)

- 화장실은 4대궁·종묘 및 조선왕릉 현대식 시설물 디자인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함
- 화장실 디자인은 단순하고 간결하며, 재료 및 색채는 창경궁의 고건물과 조화와 시각적인 간섭을 최소화 하도록 함
- 신축 위치는 탐방객(장애인 및 노약자 포함)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는 등 남·녀 화장실 입구와 보행에 불편한 이용자를 배려하는 동선으로 설치하도록 함
- 따라서 동굴도형을 참고하여 주요 건물군을 벗어나, 역사경관림에 영향이 없는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

- (2) 자문의견('22.10.19./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, 전 문화재전문위원 ○○○)
- 기존 화장실은 노후화되고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타용도록 재사용하고 인접하여 신축 위치를 검토 하도록 함
 - 신축 위치는 매장문화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굴조사를 실시 하도록 함(기존 수목은 이식)
 - 화장실은 담장 높이를 고려하여 낮추고 통풍을 위해 최대한 이격하도록 함(방풍실 및 환기시설 적용)
 - 정화조는 재사용 여부 검토가 필요함

보고사항

【 보고사항 】

안전번호 공능 2022-11-010

1. 창경궁 명정문 보수 및 단청 공사

가. 제안사항

서울 종로구 소재 사적 「창경궁」 내 명정문 보수 및 단청공사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문화재 가치 제고를 위하여 시행한 창경궁 명정문 해체수리공사('19년~'20년) 및 단청기록화 조사('20년) 완료에 따른 단청보수공사('22.12월 준공예정) 현황 및 추진경과 보고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사적 창경궁 내 보물 명정문
 -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85
 - 지정일 : 1963. 1. 18.
 - 대상 현황
 - 명정문 보수 및 단청공사
 - 범위: 보수(평방이상 해체 보수) 및 전면단청(목부재 등 2,243부재)
 - 금액: 금2,151,595천원(보수: 1,518,180천원 / 단청: 633,415천원)
 - 기간: '19. 4월 ~ '23. 2월

< 대상 문화재 현황 >

- ▶ 문화재명 : 창경궁 명정문 및 행각(보물 / '63.1.21.)
- ▶ 연 혁 : 1484년(성종15년) 건립, 1616년(광해군 8년) 중건
- ▶ 규모 : 정면3칸, 측면2칸 단층 다포식(7량가 맞보, 외2출목, 내3출목)

(3) 보고 사항(추진경과)

- ('19.4월~'20.11월)건축분야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(7회)

- 해체 보수범위는 포작이상으로 하되, 하부 평방부재는 해체 후 처리방안을 논의
- 주요구조재 가운데 추녀 3본은 구조적으로 파괴현상이 심하므로 교체하고, 층해 및 부식이 있는 부재는 근정전 보수 상황을 참조하여 보존처리하도록 한다.
- 기와는 수제기와로 제작 및 공장제 기와는 제거
- 잡상은 위치에 맞는 형태로 재제작하여 설치
- 지붕은 산자엮기를 유지하고, 철물은 전통철물로 제작

- ('19.9월) 문화재위원회(건축분과) 보고(기와변와→연목이상 지붕해체 보수)
- ('19.12월) 문화재위원회(건축분과) 보고(연목이상 해체→평방이상 지붕해체)
 - * 평방이상 해체보수(추녀3본, 서까래43본, 평방1본, 중도리1본, 동자주6본 등 교체)
- ('20.4월~12월) 명정문 단청 기록화(1616년~현재) 완료

- 목재 연륜연대 및 수종 분석(한국전통문화재대학교) 및 전통 단청안료 조사분석(국립문화재연구소)
- 단청문양 전사, 사진촬영(가시광 촬영, 접사 촬영, 적외선 촬영), 안료 및 색상 조사, 도채기법 조사, 충전기법조사, 중첩흔 탐본
- 채색층 분리 및 제거, 안료시료 채취 조사
- 단청 연혁조사: 건축 연혁 검토, 개채 시기별 단청 범위 변화 단청 특징 조사
- 부재별 단청 개채 양상 및 단청문양전사도 작성: 처마부, 도리 및 공포부, 천장 및 내부 가구부 등
- 적심재, 교체 부재, 내부 침차 등 실재 현장 조사

- ('21.9월)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심의(조건부 가결 / 전통안료 사용)
 - * 시기별 변화된 단청 문양(596부재) 검토 결과 대부분 문양이 남아있는 1616년 단청을 기준으로 설정
 - * 1975년 화학안료로 개채한 현판 및 배면 추녀부근 목부재 20부재 보존처리 후 남김
- ('22.1월) 궁능분과위원회 보고(원안접수)
- ('22.7월) 단청보수 공사 착수
- ('22.8월~11월)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(4회)
 - * 1616년 문양이 확인되지 않은 평방 및 창방은 명정전 '22년 단청조사결과를 참고.

라. 참고사항

(1) 검토의견(○○○)

- 창경궁 명정문은 그 역사성 및 상징성 등 문화재적 가치를 고양하기 위하여 문화재 복원 및 보수공사를 위한 해체정밀실측, 수리보고서, BIM(3D 도면) 제작 등을 기록화 작업을 시행하고, 단청의 원형 고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단청 개채 시기 및 수리 방향을 선정하는 등 문화재 수리 기준 및 방향을 모색하고 보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(2) 자문의견('22.12.9./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, 문화재전문위원 ○○○)

- 명정문 해체 보수에 따른 단청공사로 사전에 학술고증이 충실히 이루어졌으며, 이를 근거로 단청문양의 시기를 선정하여 시공이 이루어졌음
- 단청안료는 천연(석채)안료를 사용하여 전통기법을 재현하였고, 귀포 및 선자연 일부를 이전의 단청 상태로 남겨 조립함으로써, 단청 변화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하여 교육적 효과를 내었다고 판단 됨
- 학술고증 조사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현상태로 남기고, 지나친 단청을 시해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 하다고 판단 됨

2. 고양 서삼릉 매표소 설치 사업

가. 제안사항

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고양 서삼릉 내 신규 매표소를 설치하고자 보고합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사적 고양 서삼릉 관람객 편의를 위해 신규 매표소(가설건축물)를 설치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(1) 보고인 : ○ ○ 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고양 서삼릉(사적 / 1970.5.26. 지정)
 - 소재지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33-126
- (3) 보고내용
 - 위치 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(1구역)
 - 사업내용 : 가설 건축물 설치 1동

구분	위치	용도	건축면적	연면적	구조	층수
주1	덕양구 원당동 201-126, 103	문화 및 집회시설 (매표소)	30.60㎡	30.60㎡	경량철구조	1층

- 매표소 : 6m * 3m * 3.5m(높이) / 대기공간 : 6m * 2.1m

(4) 보고인 의견

- 기존 매표소는 담장 일부를 활용한 공간으로 노후화되고, 낮은 지반에 위치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취약하므로, 효율적인 관람 동선을 고려한 위치에 새로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됨
- 기존 매표소는 휠체어 및 유모차 보관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
- 이동식 초소를 활용하여 매표 환경에 맞도록 제작, 설치하는 것으로 「4대 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대식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」을 반영하여 조성하고자 함

라. 참고사항

(1) 자문의견(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)

- 현재 매표소는 서향으로 천정고가 낮고, 근무환경, 관람자의 매표 등 전반적으로 불편함이 드러나 개선이 필요함
- 위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 위치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며, 현 매표소의 전면의 위치가 적절함
- 다만, <세계유산 조선왕릉 보존관리 활용 중장기 계획>(2015)을 고려하여 하부 매장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며, 기초를 최소화해야 하고, 터파기 시 전문가 또는 입회조사를 권유함
- 기존 매표소를 휠체어 등 보관창고로 사용하려는 계획은 적절함
- 여러 설계안 중 근무환경, 지반 및 지붕 배수, 서삼릉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함

3.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

가. 제안사항

경기도 소재 사적 「화성 용릉릉」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대한 허가신청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자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나. 처리내용

문 화 재	소재지	신청인	사 업 내 용	처리결과	처리일자
(사적) 화성 용릉과 건릉	경기도 화성시	○○○	<p><근린생활시설 신축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치: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지구 준주거3-3,4 (6구역/문화재구역과 380m 이격) ○ 사업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지면적: 910㎡ - 건축면적(연면적): 425.06㎡(425.06㎡) - 건축규모: 1개동, 지상1층 - 최고높이: 7.9m <p>※ 기 허가받은 태안3지구 택지의 도시 관리계획 범위 내의 건축 규모</p>	허가	'22.11.25.
(사적) 화성 용릉과 건릉	경기도 화성시	○○○	<p><태양광 발전설비 설치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위치: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-357 (7구역/도시계획조례에 따름) ○ 사업내용: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면적: 1,404.99㎡ - 시설물 최고높이: 5.5m 	허가	'22.12.07.
(사적) 화성 용릉과 건릉	경기도 화성시	○○○	<p><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(허가변경)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위치: 경기도 화성시 태안3지구 (6구역/택지개발 변경시 별도 심의) ○ 사업내용: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면적 변경: 1,188,438.6㎡ → 1,191,869.0㎡ (확정측량 성과심사 결과 반영 면적 변경) - 사업기간 변경: 3단계 → 2단계 (1단계:2022.06.30./2,3단계:2023.12.31.까지) →1단계:2022.12.31./2단계:2023.12.31.까지) 	허가	'22.12.13.

문 화 재	소재지	신청인	사 업 내 용	처리결과	처리일자
(사적) 고양 서오릉	경기도 고양시	○○○	<p><향동지구 북단연결도로 건설공사(허가변경)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위치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27-4 외 34필지 (1,3구역/개별심의, 평8m/경12m) ○ 사업내용: 향동지구 북단연결도로 건설공사 (허가변경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면적 변경: 20,157㎡ → 20,532㎡ (토지구 민원사항 반영 및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변경) - 폭원(변동없음): 14~30m(4~6차로 신설) - 연장(변동없음): 1.6km(터널길이 / L=70m) 	허가	'22.12.13.